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령 기준 조정 등〉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85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등 연령 기준 조정	3
2.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장기채직 청년근로자 지원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7.
3. 회부연월일 : 2025.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와 산업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학업기간 장기화와 사회진출 지연 등 사회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채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채직 실적을 평

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등 연령 기준 조정

개정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청년실업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u>34세</u>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6. (생략)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 ----- ----- ~~-----34세-----~~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세 이상 <u>34세</u>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 ~~-----34세-----~~ ----- ----- ----- ----- -----. ② (현행과 같음)

청년의 연령은 「청년기본법」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¹⁾

그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보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청년의 기준을 각각 “15세 이상 34세 이하”, “15세 이상 29세 이하”, “39세 이하”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음.

[표 1] 주요 법령별 청년의 연령 기준

법령		연령
청년기본법		19세~34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세~34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15세 ~ 29세. 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15세 ~ 34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청년 실업자)		15세~34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청년창업기업)		39세 이하
1인창조기업육성법		39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청년실업자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고학력화로 인한 사회 진출 시기 지연, 경력 전환을 시도하는 30대 구직자 증가 등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청년지원 정책의 대상과 연령기준을 통일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촉진을 목적²⁾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취업·고용 지원사업은 주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공제 적립금 지원,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급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 연령은 모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것으로 조사됨.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2] 중소기업 청년 대상 취업·고용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개요	25예산
중기부	일반회계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 핵심인력 및 성과공유 확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내용)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0백만원 (이자 별도)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 '22년 신규가입 중단 ■ (근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5 제1호 ■ (연령) 15세이상 34세이하	7,489
	일반회계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 핵심인력 및 성과공유 확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내용)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3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18백만원(이자 별도)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종사,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23년 신규가입 중단 ■ (근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5 제1호 ■ (연령) 15세이상 34세이하	4,987
고용부	일반회계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내용)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1,2유형)과 해당 청년(2유형)에게 지원금 지급 -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480만원 ■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및 제7조 ■ (연령) 15세이상 34세이하	802,597
	일반회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내용) 청년 신규채용 1명당 월 최대 75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 - '17~'21 한시사업으로 '21.5월 신규지원 종료 ■ (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 (연령) 15세이상 34세이하	1,710
	일반회계 / 고용보험기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내용) 청년, 기업,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만기공제금 지원 ■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3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 ■ (연령) 15세이상 34세이하	29,36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고용노동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연령을 각 법률에서 달리 정하도록 한 취지는 각 법률의 청년 정책에 따라 대상을 달리 특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청년 취업·고용지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에서 그 연령을 「청년기본법」의 기준(19세 이상 34세 이하)보다 하향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함으로써, 취업·고용 지원의 필요가 있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청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보임.

같은 취지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창업초기 데스밸리(Death Valley)³⁾ 극복을 위해 청년창업의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창업생존률 제고를 도모하는 등 창업 지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청년의 기준이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정되는 경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 취업·고용지원 법령과 지원 대상(15세 이상 34세 이하)이 상이하게 되어 정책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3)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가장 어려운 시기로, 보통 창업 후 3년에서 7년 사이를 의미

또한, 동 법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청년 취업·고용지원 대상을 넓히는 초석을 마련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을 유도하려는 경우에도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등의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⁵⁾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고, 청년의 연령을 39세로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⁶⁾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해당 법률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청년고용장려금 제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연령을 상향할 경우 현장 혼선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투자적 성격을 감안하여 연령상한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청년층인 19~34세의 고용률은 45.1%(‘25.8월 기준)로 35~39세의 고용률 80.1%(‘25.8월 기준)보다 더 낮은 상황임

5)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14호)

6) 의안번호 제2208985호(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55호(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규정한 「청년고용 촉진특별법령」 및 「고용보험법령」에서도 청년연령 상한을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현행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2.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장기채직 청년근로자 지원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채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자금, 생활안정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0조의2제1항 신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채직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0조의2(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채직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채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u> <u>1.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u>

현행	개정안
	2. <u>지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u> ②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u>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평가, 우대조치 및 제30조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⁷⁾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⁸⁾에서는 정부가 지역중소기업⁹⁾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에게 장기 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⁰⁾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 청년재직자의 주거자금·정착자금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¹¹⁾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③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9)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0)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양 법률에 근거해 실시중인 예산사업은 없는 상황임.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고, 현재 8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표 3]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주: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기준일 : 2023년 7월 1일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개정안은 지역 소멸의 우려가 높은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주택자금, 생활안정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근로자의 취업 매력도를 높이고, 청년근로자를 장기고용 중인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실시하여 인재 확보 및 장기채직 유도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소재지 거주 근로자 지원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 우대 규정 등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자금·생활안정자금 직접 지원의 명문화로 인한 재정소요 확대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채직과 지역정착을 위해 주택자금 등을 지원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행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유사 규정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기존 법률의 시행령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지원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467